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4 - 36 - 105호 (사건번호 : 201405조사007)

안 건 명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의결연월일 2014. 8. 21.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7,1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27,889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50.1%(14.6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13조 8,115억원(13.12월말 기준)으로 53.0%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SKT	K T	LGU ⁺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7,889 (50.1%)			
매 출 액 (점유율, %)	138,115 (53.0%)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MVNO 가입자 포함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가.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6)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금 예외 허용('06.3.27 ~ '08.3.26)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7회('10.9월, '11.9월, '12.12월, '13.3월, '13.7월, '13.12월, '14.3월)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³⁾하였다.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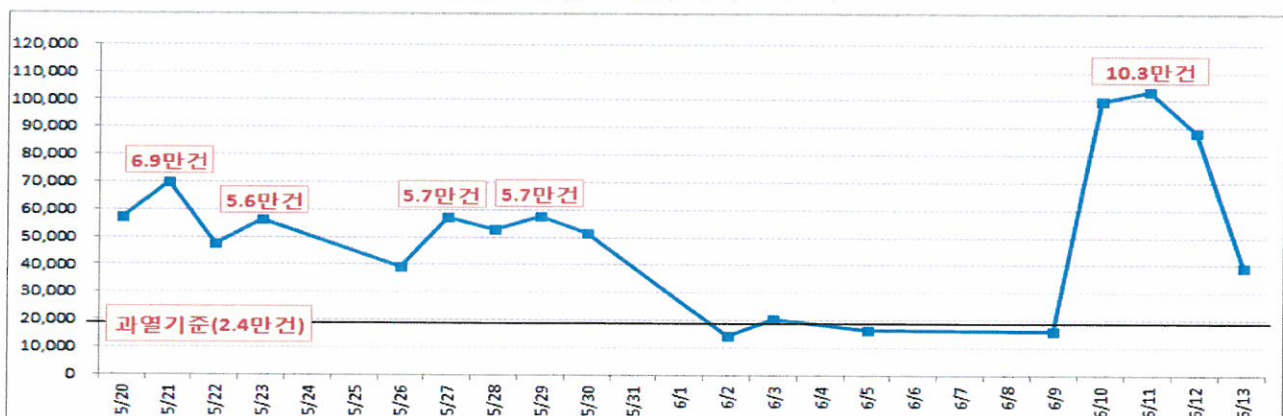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13.3.14일에는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을, '13.7.18일에는 KT 7일의 단독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669.6억원의 과징금(SKT 368.8억원, KT 191.5억원, LGU+ 97.2억원)을, '13.12.27일에는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과 총 1,064억원의 과징금(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을, '14.3.13일에는 LGU+ 14일, SKT 7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304.5억원의 과징금(SKT 166.5억원, KT 55.5억원, LGU+ 82.5억원)을 부과하였다.(LGU+ 14일, SKT 7일 신규 모집금지 아직 미집행)

3. 이동전화 시장현황

'14.5.20~6.13. 기간 중 시장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일평균 번호 이동 가입자수(이하 MNP)는 평균 4.2만건으로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동시영업재개를 앞두고 일부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동시영업개시 하루전인 '14.5.19. 이통3사 마케팅 담당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시장과열 자제를 당부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제재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영업재개 첫주 일평균 5.7만건, 둘째주 일평균 4.8만건 등 MNP 규모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4만건)을 크게 초과하였다.

또한 사실조사 착수 이후에도 6.10일 MNP 규모가 9.9만건, 6.11일 10.3만건에 달하는 등 시장과열이 보다 심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에서는 이러한 시장과열을 “5.23대란”, “6.9대란” 등으로 부르며 시장과열상황을 전파하였다.



523대란, 갤럭시S5-아이폰5S가 단돈 10만원? "영업재개 3일 만에 스팟 판..."

2014.05.25 | 티브이데일리 | 미디어다음

523대란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이동통신사 3사가 영업재개를 한 지 3일 만에 **523대란**이 일어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오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영업재개 첫 주말, '523 대란' 발발.. 갤럭시S5, 아이폰5S 10만원에 판매 2014.05.26 | 케이벤치



523대란, 정부 제재 아무 소용 없었다? 2014.05.24 | 민중의소리

523대란이 또 터져버릴까?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영업 전선에 뛰어들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523대란**이 발생했다는 내용들이 각종 게시물들을 통해 울...



'609대란'에 갤럭시S5-G3아이폰5S 모두 '공짜' 2014.06.10 | 조선비즈 | 미디어다음

LG유플러스가 점유율 20%에 진입하기 위해 맞대응으로 보조금을 풀면서 이른바 '**609대란**'을 일으키는 데 한 몫을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10일 하루동안 번호이동 10만건..다시 불붙은 보조금 경쟁 2014.06.11 | 조선비즈 | 미디어다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날 상황을 지난 2.11대란에 빗대 '**609대란**'으로 불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날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고, 자...



69대란, 갤럭시S5-G3 공짜로 팔았다 '페이백' 조심해야 2014.06.10 | 뉴스엔 | 미디어다음

69대란 소식이 전해졌다. 6월9일 스마트폰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것. 6월9일 오후부터 이동통신 3사는 삼성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LG G3 등 최신 스...

갤럭시노트 3 갤럭시S5 무료 '69대란', 체면 구기는 방통위 2014.06.10 | 스타데일리뉴스



G3 보조금 대란 1500억원 오갔다..방통위 보조금 정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2014.06.13 | 서울신문 | 미디어다음

이뤄진 번호이동은 약 30만건에 달했다. 공짜 G3, 갤럭시S5로 상징되는 소위 **69대란**(6월 9일 스마트폰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것) 직후인 10일에만 10만...

공짜 수준의 단말기 판매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부 시간대 및 지역에 전파되었으며, 온라인 상의 스팸성 할인 판매뿐만 아니라 현장유통망에서도 시간대 및 단말기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차별 적용되는 등 유통망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보조금 수준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가(60만원 이상) 많았고, 판매시간대, 유통망, 지역, 단말기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열이 발생하였던 '14.5.20~6.13. 기간 동안 이통3사간 이동전화 가입자수 점유율⁴⁾은 SKT가 0.23% 증가한 반면, KT는 0.23% 감소하는 등 일부 시장점유율 변동도 수반되었으며, 해당기간 중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SKT가 33.2천건으로 대부분(88.7%)을 차지하였다.

< 이통3사간 시장점유율 변동 >

구분	'14.5.19일		'14.6.13.		점유율 변동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SKT	26,022천명	50.04%	26,220천명	50.28%	0.23%
KT	15,294천명	29.41%	15,217천명	29.18%	△0.23%
LGU+	10,684천명	20.55%	10,715천명	20.55%	-

< 이통3사간 MNP순증 규모 >

구분	MNP 순증 규모	순증 비중
SKT	33,200 건	88.7%
KT	△37,447 건	△100%
KGU+	4,247건	11.3%

IV. 사실조사 결과

1. 행위사실

4) MVNO를 통한 가입자 제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14.5.29일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4.5.20.~6.13.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의 신규·기변 가입 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소위 "6.9대란"이라 불리는 시장과열 현상을 빚게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다른 이통사들과 경쟁적으로 시행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사실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하 유통점의 PC파일을 삭제케하고 판매 일보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조사회피를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정책서 및 단가표를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한 뒤 추가 영업정책은 구두 혹은 문자로 신속하게 전파하거나, 단가표의 리베이트 규모를 암호화하였다.

또한 정식 가입신청서 및 전산 상에 보조금 지급사실 및 규모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서식지를 만들어 보조금 지급 현황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지급사실 및 규모를 은폐하였고, 일정기간 이후에 전산 상의 할부원금을 조정하거나 현금지원(페이백)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방해하였으며, 일부 피심인의 대리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의 현장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 현장조사 방해 내역 >

조사일	유통점 구분	현장조사 방해 내역
2014. 6. 16.	SKT 대리점	조사중 네트워크 연결 차단
2014. 6. 27.	SKT 대리점	조사중 자료삭제, 네트워크 연결 차단
2014. 7. 7.	SKT 직영점	조사중 자료삭제

< 100만원이상 리베이트 지급>

모델 구분	스마트 세이프	요금제 기준	한성 옵션 가입 필수	모델	할부원금	인센티브		
						010신규	MNP신규	010신규
4G	40/50	무제한 61↑		IM-A910S	783,200	420,000	1,020,000	363,200
	40/50	무제한 61↑		LG-F320S	699,600	490,000	1,090,000	209,600
	40/50	무제한 61↑		LG-F350S	999,900	440,000	800,000	559,900
	X	55↑		SHV-E250S_32G	847,000	450,000	650,000	397,000
	X	55↑		SHV-E250S_64G	913,000	450,000	640,000	463,000
	40/50	무제한 61↑		SM-G910S	1,089,000	320,000	810,000	769,000
	40/50	55↑		SM-N750S	799,700	370,000	420,000	429,700
	40/50	무제한 61↑		SM-N900S	1,067,000	370,000	920,000	697,000
	X	무제한 61↑		SHV-E230S	891,000	790,000	790,000	101,000

본 대안모델 (A240S, A310S, A301S, P-2100) 모델/일반기종 개종시 일부 25만원초과시 인센티브 금액 미달시, 현금결제불가/한금개종

*T트레이딩 포인트로 Btv모바일을 무료모바일로 / **52요금제이상 고객에게 Btv모바일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고객 VOX

< 히든정책 운영 공지 내용 >

방통위 이슈로 인해 단가표 010, MNP LTE 전모델에 20만원 숨겨있습니다.
 실 판매하실때에는 정책표 마진에서 20만원 추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방통위 사실조사 대응 지시 >

- GR Issues 최소화
 - > 매장 내 서랍, 캐비닛, 후방 창고, 담배실 등 모든 보관 장소 클린징 및
 - > 매장 컴퓨터 내 불필요한 파일, 서류 등 존재 여부 확인
 - ✓ 고객 정보 등 있어서는 안될 파일, 문서 파기 확인
 - 단가표는 정상 단가표만 출력해서 비치하고 실제 단가표는 출력하지 말 것
 - 컴퓨터 내 부득이하게 저장을 할 경우 파일명을 다르게 하여 저장할 것

2.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4.5.20.~6.13.)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1,104,803건 중 무작위로 추출한 11,059건(1.0%)의 조사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 중고폰·실버폰 개통건과 태블릿 PC 가입건·2G 서비스 가입건 등을 제외한 10,654건을 유효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유효표본은 유통구조별로는 일반유통점⁵⁾ 9,944건과 대형유통점⁶⁾ 710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가입형태별로 보면 신규 가입 8,529건(번호이동 6,799건, 일반 1,730건)⁷⁾과 기기변경 가입 2,125건이었다.

〈 유통구조별 구성 〉

(단위 : 건)

구 분	일반유통점	대형유통점	합 계
조사표본	10,349	710	11,059
유효표본	9,944	710	10,654

〈 가입형태별 구성 〉

(단위 : 건)

구 분	신규		기기변경	합 계
	번호이동	일 반		
조사표본	7,028	1,849	2,182	11,059
유효표본	6,799	1,730	2,125	10,654

3. 보조금 차별

가. 기간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516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740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5) 대형유통점을 제외한 일반유통점과 직영대리점, B2B대리점 포함

6) 대형마트, 대형 양판점, 홈쇼핑 등 포함

7)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보조율’)은 평균 69.7%였다. 일별 평균 보조금은 최소 275천원에서 최대 851천원으로 그 차별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평균 번호이동이 한때 10만건이 넘어 “6.9대란”으로 불리웠던 시장과열이 발생한 ‘14.6.9~6.13. 기간의 일별 평균 보조금 수준은 760천원으로 그 이전의 423천원에 비해 보조금 수준이 현격히 높았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보조율
조사대상 기간 (‘14.5.20.~6.13.)	740	516	69.7%
6.9대란 (‘14.6.9.~6.13.)	792	760	95.9%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나.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561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602천원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400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35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보다 226천원 낮았는데, 이는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신규			기기변경(B)	보조금차이 (A-B)
	전체(A)	번호이동	일 반		
보조금	561	602	400	335	226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71.2%, 기기변경 가입자는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53.5%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5.8%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점유율)	246 2.9%	290 3.4%	1,923 22.5%	629 7.4%	878 10.3%	4,563 53.5%
기기변경 (점유율)	357 16.8%	241 11.3%	460 21.6%	131 6.2%	600 28.2%	336 15.8%

다.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5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46.0%인데 반해 2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0.6%로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603	531	1,266	1,117	760	1,478	4,899	10,654
비 중	5.7%	5.0%	11.9%	10.5%	7.1%	13.9%	46.0%	100.0%

V.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3. 위반율

가. 전체 위반율

피심인의 전체 조사대상 10,654건 중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8,254건으로 전체 위반율은 77.4%였으며, 위반평균보조금은 615천원, 전체 평균보조금은 516천원이었다.

〈 위반율 및 평균 보조금 〉

(단위 : 건, 천원)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전체평균보조금
SKT	10,654	8,254	77.4%	615	516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번호이동 위반율은 85.8%로 010신규 가입의 위반율 72.0% 및 기기변경 위반율 55.2%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200천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입형태별 이용자 차별이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전체	740	516	77.4%	615
010신규	670	400	72.0%	485
번호이동	776	602	85.8%	668
기기변경	683	335	55.2%	490

다.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8,254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⁸⁾을 살펴보면, 40~50만 원대가 전체 대비 17.9%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 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5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1,117	760	1,478	1,266	774	754	963	474	668	8,254
분 포 율	13.5%	9.2%	17.9%	15.3%	9.4%	9.1%	11.7%	5.7%	8.1%	100%

4.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8)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275억 원이다.

나. 기준 과징금

위원회 의결로써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25% 상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균 위반율이 77.4%임을 고려하여 산정한 2.25%의 부과기준율에 과열주도사업자가산 0.25%를 더하여 관련매출액(7,612.2억원)에 2.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190.3억 원이다.

2. 필수적 가중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6회('11.9월, '12.12월, '13.3월, '13.7월, '13.12월, '14.3월)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7회째이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50%를 가산한다.

3. 추가적 가중

피심인은 시장 과열을 주도한 자로 판단되어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30%를 추가 가중한다.

4.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371억원이다.

VII.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8. 2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